

### 1. 개요

□ 일시·방식 : 2021. 2. 4.(목) ~ 2. 8.(월) / 서면회의

- (결과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에서 서면회의 결과 및 제7차 분위원회 상정 안건 확정

\* 김한중 분과위원장, 정학철 위원, 조병욱 위원, 박중서 위원, 박일진 위원, 박준기 위원, 강마야 위원, 손영준 농어업정책팀장

□ 참석 인원 : 18명

- (분과위원장) 김한중 분과위원장
- (분과위원) 19명 중 17명 참석 \* 불참 : 송기호·최준호 위원

### 2. 서면회의 의견 취합 결과

□ (심의안건)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의결  
(可 18명, 否 없음, 기권 없음)

○ 주요 의견

- 비농업인, 비농업법인의 농지소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령 개정 명시 필요. 전국단위 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농업진흥구역 실태조사 등에 대한 정보 공개 필요(강마야 위원)
-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체계의 개편이 우선되어야 하고, 차제에 행정적 이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연구와 대안제시가 필요함. 근본적으로 전체 농지에 대해서 현재 수준에서 전용불가 원칙을 법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함(김태연 위원)
- 농지취득자격 증명제도를 보완하더라도 비농인 농지소유 악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인바,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력농업인을 보완토록 하는 것이 필요(김현아 위원)

- 농지 소유 실태 조사 관련하여 관리체계 등의 문제점이 있는 상황으로 전국적인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박종서 위원)
- 제시된 내용들에 대한 추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농특위 차원의 농지정책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 필요(박준기 위원)
- 우선 순위 과제 선정이 필요하며 사회 지도층의 농지소유에 대한 논의도 추가 필요. 농지 문제는 직불금, 농업인의 정의, 경영체 등록 보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서용석 위원)
- 가축사육에 필요한 축사시설은 지자체 조례 및 민원 등으로 인해 거주지 인근에 축사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워 장거리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은 것이 현실임. 따라서 축사시설 운영의 어려운 점을 감안 해당축사용지로부터 최소한 100Km 이내(현행 30Km 이내) 에서 8년간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양도세를 면제토록해야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한 것이라고 사료됨(이기홍 위원)
- 2년 이상 자경 하더라도 임대수탁기간을 자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또는 자경기간의 2배 정도만 허용하고 이후에는 소유를 불허, 매도하도록 조치 필요. 또한 상속 농지라도 자경할 수 없으면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강력한 조치 필요(윤금순 위원)
- 부정 취득 및 단기 양도시 불로소득에 대한 보다 높은 중과세 부과 검토 필요(정명생 위원)
- 농지는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이므로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줄여야 함(정학철 위원)
- 국토종합계획 수립 시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는 농지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토종합계획에 농지정책의 장기 비전과 전략이 정립되어 반영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이 필요(최동근 위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8년간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 폐기 필요. 2년 이상 실경작 농업인 및 농어촌공사에 매도 할 경우 양도세 면제 추진 필요. 농지취득 자격을 2년 이상 영농활동 경력자로 제한하고 영농활동 증명자료로 농협 및 도매시장 등 출하실적 증명서 포함 필요. 농지의 임대수탁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 필요(최철원 위원)

□ (심의안건)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의결 (可 15명, 쯤 2명, 기권 1명)

○ 주요 의견

- 물가관리정책과 수입농수산물제도의 근본적인 검토개선과 긴밀하게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당부처의 향후 대응방안과 구상 의견이 담겨있어야 함. 제시하는 전략을 동시에 전국적으로 실행할 수 없다면, 우선 의지가 강한 광역지자체 시범사업으로 국고 지원 실행 후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제안(강마야 위원)
- 가격위험완충제도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이며 이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수십년 동안 경험해서 실패를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이를 대체하는 직불제도로 전환된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식품유통체인 상에서 농민의 영향력이 상인의 영향력보다 작기 때문에 시장도매인제도가 채택되어도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강화하기는 어려움(김태연 위원)
- 가격위험완충제도는 시장개입을 통한 가격조절로 일정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그보다 큰 수혜가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김현아 위원)
- 가격위험완충제도 도입 관련하여 농산물 가격 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되며, 실질적인 대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농민들과 관련기관 등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박종서 위원)

- ‘계약거래 지원제도’와 ‘민-관 협력 수급조절 체계 구축’은 산지 조직과 관련하여 다소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 혹은 차별성 확보를 위한 내용 보완 등 검토 필요(박준기 위원)
- 지자체 시장도매인제도가 정확히 지자체별 동의를 확인한 바도 없으며, 특히나 전남도 시장도매인제는 전라남도의 책임있는 분(지자체 공무원)의 실제 계획도 듣지 못함 상태임. 또한, 농식품부에서 반대를 하고 농민단체간의 이견이 있는 사안은 기본적으로 농특위 논의에서 빠져야 함(서용석 위원)
- 축산물도 최저가격보장제 대상품목 포함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이기홍 위원)
- 원 의안에서, ‘전남형 공영 시장도매인제도’에서 ‘전남형’을 삭제하는 것은 의미상 아주 큰 문제가 있음. 공영 시장도매인 제도를 지자체 중심으로 도입하고자 해도 마치 지자체가 준비되지 않아 실현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전남도는 농식품부의 승인이 없는 한 연구용역 등 이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상황과 도입 필요성을 농식품부에 전달했음. 그럼에도 ‘전남형’이란 지역 명칭을 의안에서 삭제한 것은 지자체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농식품부의 의견에 농특위가 동의한 것임. 농특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소속 위원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의안에 담아야 함. 소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훼손하려는 것에 항의하며 의안 자체를 부결 함(이무진 위원)
- 의무자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생산자 조직 자율성 강화 필요(최동근 위원)
- 도매시장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경매제는 공영 도매시장법인을 도입하고 시장도매인제도 공영 시장도매인으로 선 도입하여 공영 도매시장이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만 기능하지 않도록 할 필요 (최철원 위원)

## □ (보고안건)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 ○ 주요 의견

- 가축분뇨 시행규칙 개선, 조사료 지급률 산정기준 변경, 조사료 관련 통계자료 DB화 등 축산업 발전의 인프라 개선에 우선적인 재정안배가 필요(김현아 위원)
- 소규모 축산농가까지도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 사료 생산 효율성 및 경축순환 등의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박준기 위원)
- 공익형 직불제의 선택형을 사료 작물 생산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함. 조사료 생산 축산농가에 별도의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현재 작물생산에 활용되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종작물 재배지를 사료 생산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김태연 위원)
- 사료작물 재배, 사료작물 이용,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은 모두 지역 내 경종과 축산의 순환구조 하에서 이뤄지는 것을 전제해야 하고,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 필요(강마야 위원)
- 유휴 산지를 초지로 이용할 방안 등에 대한 고려 필요(윤금순 위원)
- 함께 참여해야 할 경종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내용과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논 타작물 재배사업을 사료 자급률 제고사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확대 할 수 있는가도 매우 중요(정학철 위원)
- 국가식량계획과 연계하여 조사료 자급률 제고 및 곡물사료 의존도 축소 목표 제시가 필요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 필요. 경종농가들이 사료작물(동계 등) 재배 유도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필요(최동근 위원)
- 사료작물 정부보조금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고를 포함한 지원대책 마련시 대규모 농가와 영세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안 마련 필요(정명생 위원)

- 광역단위 조사료 공급량 연동 사육두수 조정제 도입 필요. 경축순환 탄소제로 인증제 도입 검토 필요. 국내산 조사료(70%이상) TMR, TMF 지원사업 검토 필요. 젓소 지역 쿼터 해제를 통해 경기도 낙농이 조사료 공급이 원활한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 (최철원 위원)

## □ 추가 사항

- 단순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필요시 수정 의결)을 분과위원장에게 위임 : 의결 (可 15명, 쟀 3명, 기권 없음)
- 쟁점사항이 많은 안건에 대해서는 과반수 동의를 받았더라도 다음 분과위원회에 재상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분과위원장에게 위임 : 의결 (可 15명, 쟀 3명, 기권 없음)

## 3. 상정 안건 확정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2.17) 의결)

- (안건1)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 상정(심의)
  - 분과위원 및 관계부처 제출의견 일부반영 안으로 상정
- (안건2)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보고)
  - 관계부처 의견조율을 위해 의안 수정하느니 원안을\* 충분히 담아서 본위원회 상정하기 위해 보고안건으로 변경 상정
    - \* 가격위험완충제도 ‘실시 검토’에서 ‘실시 필요’로, 삭제한 ‘전남형 공영 시장 도매인제도’ 복구, FTA 협정 재협의를 ‘검토’에서 ‘필요’로 재수정 등
- (안건3) 사료 수급 이용실태 및 자급률 제고 방안(안) : 차기 상정(보고)
  - 제7차 본위원회 상정안건 과다로, 본 안건에 대해 차기 본위원회에 상정하기를 농특위 사무국(총괄팀) 요청에 따라 상정 연기
- (안건4)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상정(심의)
  - 제6차 분과위원회 결정\*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 후 조율된 안건으로 본위원회 상정
    -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에서 제출할 의견과 본 안건을 농특위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본위원회 상정 여부 확정(20.12.3.)

#### 4. 향후 계획

- 제7차 농특위 본위원회(서면, 2.22~2.24) 안건 상정 및 대응
  - 심의안건(2건) : 농지 소유 및 이용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안), 축산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안)
  - 보고안건(1건) : 농산물 가격 안정 방안(안)
- 농어업분과 운영소위원회 개최(3.9)
  - 2021년도 농어업분과위원회 운영계획 논의

**붙임**

**안건 의결 가·부 및 검토의견 제출 집계**

	가·부 사안				유·무 사안			
	안건1 (농지제도)	안건2 (가격안정)	추가1 (의견반영 위원장 위임)	추가2 (쟁점안건 위원장 위임)	의견1 (농지제도)	의견2 (가격안정)	의견3 (사료방안)	
김한중	○	○	○	○	X	X	X	
강마야	○	○	○	○	○	○	○	
김태연	○	X	○	○	○	○	○	
김현아	○	○	○	○	○	○	○	
박일진	○	○	○	○	X	X	X	
박종서	○	○	○	○	○	○	X	
박준기	○	○	○	○	○	○	○	
서용석	○	○	○	○	○	○	X	
이기홍	○	○	X	X	○	○	X	
이무진	○	X	X	○	X	○	X	
이학래	○	기권	○	○	X	X	X	
임영환	○	○	○	○	X	X	X	
윤금순	○	○	○	X	○	X	○	
정명생	○	○	○	○	○	X	○	
정학철	○	○	○	○	○	X	○	
조병옥	○	○	○	○	X	X	X	
최동근	○	○	○	○	○	○	○	
최철원	○	○	X	X	○	○	○	
집 계	가 (있음)	18	15	15	15	12	10	9
	부 (없음)	0	2	3	3	6	8	9
	기권	-	1	-	-	X		